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 告)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가. 편성이유

-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이 추가교부 내시되고,
-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나. 편성원리

- 세입은 특별교부금 교부예정액 및 학교재해복구 보상금 전액계상하고,
- 세출은 특별교부금 및 학교재해 복구보상금의 교부예정 목적대로 계상하였음.

다. 재원판단

- 총괄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과부족	비 고
16,824	16824	0	교부목적 금액 계상

-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계 원		세 출	
계	16,824	계	16,824
• 특별교부금	16,791	• 공고부지매입	15,000
- 구의공고부지매입	15,000	• 북부교육청청사이전	1,791
- 북부교육청청사이전	1,791	• 학교재해복구 보상금	33
• 학교재해복구 보상금	33	- 서부관내 국·중학	12
		교 장고개속 등	
		- 동작관내 국교장	1
		교 도장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가.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제1조에서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조 7,762억 9,207만원과 간주처리 분 19억 4,608만 7천원, 합계 1조 7,782억 3,815만 7천원을 각각 1조 7,950억 6,235만 5천원으로 하고, 세입·세출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나.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98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9%인 168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보조금 재원에서 예산총액 67.2%에 해당하는 1조 2,071억 5천만원으로서, 1.4% 증가되었습니다.
- 자체수입의 기타수입은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세입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93.기정예산(B)				비교 증-감 (A-B)		
	금 액	구성비 (%)	제1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국고보조)	계		금 액	증가율 (%)	
					금 액	구성비			
합 계	1,795,062	100.0	1,776,292	1,946	1,778,238	100.0	16,824	0.9	
국 고	계	1,207,150	67.2	1,188,413	1,956	1,190,359	66.9	16,791	1.4
	교 부 금	601,983	33.5	585,192	-	585,192	32.9	16,791	2.9
	양 여 금	599,543	33.4	599,543	-	599,543	33.6	-	-
	보 조 금	5,624	0.3	33,678	1,946	5,624	0.3	-	-
전 입 금	271,538	15.2	271,538	-	271,538	15.3	-	-	
자 재 수 입	계	316,374	17.6	316,341	-	316,341	1.8	33	-
	입 학 금 및 수 입 료	205,012	11.4	205,012	-	205,012	11.5	-	-
	제 산 수 입	39,039	2.2	39,039	-	39,039	2.2	-	-
	이 월 금	63,105	3.5	63,105	-	63,105	3.6	-	-
	증 지 수 입	9,213	0.5	9,185	-	9,185	0.5	33	-
	기 타								

## 2) 세출예산(안)

-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950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9%에 해당하는 168억 2,400만원이 세입재원으로 증액 됨에 따라,
- 성질별 세출예산안에서 시설비 비중이 17.9%에서 5.3% 증액된 3,355억 9,800만원으로 되고,
- 소관별 세출예산안에서 교육청 본청의 세출예산은 3.5% 증액된 4,435억 4,200만원으로 24.7%를 점하고,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은 북부교육청은 17억 9,100만원 증액되고, 서부교육청은 3,200만원 증액, 동자교육청은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세출-성질 및 소관별

(단위: 백만원)

구분	'9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93.기정예산(B)				비교 증-감 (A-B)		
	금액	구성비 (%)	제1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계		금액	증가율 (%)	
					금액	구성비			
인건비	1,077,735	60.0	1,077,735	-	1,077,735	60.6	-	-	
학교운영비	112,810	6.3	112,810	-	112,810	6.3	-	-	
성사학지연비	200,790	11.2	200,790	-	200,790	11.3	-	-	
시설비	335,598	18.7	318,774	-	318,774	17.9	16,824	5.3	
전교육환경	1,150	0.1	1,150	-	1,150	0.1	-	-	
개선비									
별교육사업비	33,631	1.9	31,685	1,946	33,631	1.9	-	-	
교육행정비	16,373	0.9	16,373	-	16,373	0.9	-	-	
예비비기타	16,975	0.9	16,975	-	16,975	1.0	-	-	
합계	1,795,062	100.0	1,776,292	1,946	1,778,238	100.0	16,824	0.9	
교육위원회	912	0.1	912	-	912	0.1	-	-	
본 청	교육행정비	47,776	2.7	47,776	-	47,776	2.7	-	-
	교육사업비	29,410	1.6	27,464	1,946	29,410	1.7	-	-
	학교비	174,356	9.7	174,356	-	174,356	9.8	-	-
	사학지연비	127,378	7.1	127,378	-	127,378	7.2	-	-
	시설비	64,522	3.6	49,522	-	49,522	2.8	15,000	30.3
	제지출경비	100	0	100	-	100	-	-	-
계	443,542	24.7	426,596	1,946	428,542	24.2	15,000	3.5	
교 육 청	동부교육청	184,184	10.3	184,184	-	184,184	10.4	-	-
	서부교육청	118,818	6.6	118,786	-	118,786	6.7	32	0.0
	남부교육청	128,109	7.1	128,109	-	128,109	7.2	-	-
	북부교육청	266,179	14.8	264,388	-	264,388	14.9	1,791	0.7
	중부교육청	64,656	3.6	64,656	-	64,656	3.6	-	-
	강동교육청	143,792	8.0	143,792	-	143,792	8.1	-	-
	강서교육청	185,410	10.3	185,410	-	185,410	10.4	-	-
	강남교육청	140,867	7.8	140,867	-	140,867	7.9	-	-
	동작교육청	101,718	5.7	101,717	-	101,717	5.7	1	0.0
	소계	1,333,733	74.3	331,909	-	1,331,909	74.9	1,824	0.1
예비비	16,875	0.9	16,875	-	16,875	0.8	-	-	

3) 교육위원회 의견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세입·세출이 각각 총액 1조 7,782억  
3,815만 8천원에서 168억 2,419만 8  
천원이 증액된 세입·세출 각각 1조

7,950억 6,235만 5천으로 하고,

· 세입내용 중 증액된 부분은, 구의공  
고 부처매입비에 150억원, 북부교육청  
청사신축비 17억 9,100만원이 특별교  
부금으로 내시 되었으며, 3,319만 8천

원이 3개교 화재복구 보상금으로 교부되었음.

- 교육위원회의에서는 세출내용 중 증액된 부분은 세입내용에서 내시던 금액 전액을 증액계산한 것으로 금액의 수정은 없으나, "구의공고부지 매입비"는 앞으로 공고 3개교를 신설예정인바, 매입이 용이한 것부터 집행할 수 있게 포괄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의물삭제하고, "공고부지매입비"로 수정하기로 소위원회위원 전원 합의하여 수정의결하였음.

### 3. 검토의견

#### • 예산규모

'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50억 6,235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9% 인 168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 편성사유 및 편성내역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 내시 되고,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한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67억 9,100만원 중 교육체계개선 계획에 따라 공고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공고부지 매입비로 150억원,

그리고 북부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비로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재해복구 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300만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와 동작교육청 관내 국민학교의 화재복구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화재복구비는 기정예산으로 긴급 복구완료하여 이에 대한 보전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말이 가까운 11월 2일 제출되어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사고이월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총칙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간주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 지정된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국가로부터 교부된, 세입예산을 확정하여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목적교부 내시되고, 목적지정사업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報告 마쳐겠습니다.

○委員長 李結鎭 다음은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案件의 성질상 一問一答으로 하였습니다. 質問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教育監이 提出한 1993年度 서울특별시 教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豫算案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아직 時間이 많이 남았는데 그대로 그냥 다음 案으로 強行할까요? 같은 教育廳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意見을 내 주세요.

○車奉五委員 잠깐 時間을 節約하는 뜻에서 執行部의 提案說明을 일단 듣고 그리고 時間이 있으면 계속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提案說明을 듣고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進行하는 方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結鎭 어떻게 할까요? 지금 車奉五委員께서 時間이 남아 있으니까 教育廳의 報告를 받고 그리고 나서 停會를 하고 점심식사 끝나고 續開하는 이런 것으로 說明이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